

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0일
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원(삼성로 212)
4. 정비구역의 면적 : 243,552.6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정희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212, 지상1층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13개월
8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6. 7. 2.
9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최고높이(m)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 수
222,152.3	21.66	331.52	1,462,754.403	177.8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6층 ~ 지상49층

10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지하6층/지상49층 아파트 29개동, 5,850세대

공급구분	주택의 형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			
				59㎡형	76㎡형	84㎡형	96㎡형	109~128㎡형	143(펜트)㎡형
계	아파트	29	5,850	1,107	1,268	1,590	967	862	56
분양	아파트	미정	4,746	269	1,132	1,460	967	862	56
공공임대	아파트	미정	909	813	96	—	—	—	—
공공분양	아파트	미정	195	25	40	130	—	—	—

11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에 관한사항

종 류	규 모	시 행 자	비 고
근린공원	10,864.5㎡	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	
소공원	6,814.5㎡		
도로	3,481.3㎡		
주차장	연면적 11,399.9㎡		소공원 중복결정
공공청사(파출소)	240.0㎡, 연면적 496.0㎡		
저류시설	40,000㎡		근린공원 중복결정

12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- 「주택법」 제1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- 「하수도법」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

13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92)에 비치 보관 끝.